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쇄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박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지방자치법」 제15조
(안 제1조, 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